

제312회 예산군의회(임시회) 집회공고

「지방자치법」 제5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군수로부터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54조 제4항에 따라 제312회 예산군의회(임시회)를 다음과 같이 집회함을 공고합니다.

다 음

- 집회일시 : 2025년 4월 14일(월) 10:00
※ 기 간 : 2025. 4. 14. ~ 4. 18. / 5일간
- 집회장소 : 예산군의회 본회의장

2025년 4월 3일

예산군의회 의장 장 순 관

